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사항 명확화 및 사후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(정의)

- 1) ‘농가,임가,어가’에 대한 정의 문구 변경
- 2) ‘지방자치법’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4조(조사사항)

- 1) 조사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

다. 제6조의2(조사의 보완)

- 1) 시험조사, 시범예행조사, 사후조사 실시 목적 및 근거 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포함

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생계유지”를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유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생계유지”를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유지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생계유지”를 “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유지”로 한다.

제2조제4의2호 중 “제4조의2제4항”를 “제7조제4항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나이”를 “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나이”를 “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나이”를 “가

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”로 한다.

제6조의2(조사의 보완)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 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농가”란 가구주(家口主) 또는 동거 가구원(家口員)이 <u>생계유지</u> 를 목적으로 농업(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</u> ----- -----
3. “임가”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<u>생계유지</u> 를 목적으로 임업(육림업, 벌목업,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.	3. -----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</u> ----- ----- -----
4. “어가”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<u>생계유지</u> 를 목적으로 어업(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.	4. -----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활</u> ----- ----- -----
4의2. “행정리”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.	4의2. -----제7조제4항-----
4의3. (생략)	4의3. (현행과 같음)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조사사항) ① (생략)	제4조(조사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1.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<u>성명·성</u>	1. -----

<u>별·나이</u>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. ~ 10. (생략) ② (생략) 1.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<u>성명·성별·나이</u>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. ~ 7. (생략) ③ (생략) 1.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<u>성명·성별·나이</u>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. ~ 8. (생략) <신설>	---<u>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</u>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<u>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</u>--- 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<u>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국적</u>--- ----- 2. ~ 8.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(조사의 보완)①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. ②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를 할 수 있다.
--	---